

제330회 임시회
2014. 6.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6. 2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현행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인적·기반재난, 기반체계, 기반보호총괄반 등의 용어 폐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안 제3조)
 -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의 예·경보 발령 등으로 구체화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49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
-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6조)
 - 현행 실·국·본부 단위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역할 부여 등 신설(별표 3~7)
-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안 제7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협의사항, 개최권자 등을 구체화
- 현장상황관리관 임무 및 시·군 대책본부 지휘 관련 사항 정비(안 제11조~제12조)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안 제13조~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 신설(안 제17조~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안 제19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안 신설
-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규정을 신설(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 안전대책본부 기능 상세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1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현행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인적·기반재난, 기반체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 폐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안 제3조)
 -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의 예·경보 발령 등으로 구체화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49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
-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6조)
 - 현행 실·국·본부 단위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역할 부여 등 신설(별표 3~7)
-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안 제7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협의사항, 개최권자 등을 구체화
- 현장상황관리관 임무 및 시·군 대책본부 지휘 관련 사항 정비(안 제11조~제12조)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
신설(안 제17조~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안 제19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안 신설
-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규정을 신설(안 제21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생 략(전부개정) ※현행조례 불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요약 발취)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충청북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지원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파견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군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본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 ② 시·군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시·군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 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시·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구성·운영) 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의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재난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소집 등) ① 재난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8.6>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의 재난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8.6><중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3.8.6>
- ③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8.6><중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3.8.6>

- ④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22, 2013.8.6><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3.8.6>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22, 2013.8.6><제3항에서 이동 2013.8.6>
-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2.2.22, 2013.8.6><제4항에서 이동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개정 2013.8.6>)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8.6>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신설 2013.8.6><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3.8.6>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 ②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2.22>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2013.3.23>
-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제46조(예보·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개정 2013.5.31>

1.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조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본조신설 2014.2.7.]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비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도비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 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3. 5. 10>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3조 관련)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1	무상급식 지원	30	40	
2	도 주관 통계조사	100		
3	도·시군 공동 통계조사	20	30	
4	도민정보화 진흥 사업	20	30	
5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 사업	정액		
6	예비군 육성	20	30	
7	거주외국인(새터민) 보호	30	40	
8	자원봉사센터 지원	20	30	
9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50		
10	민방위 교육	30	40	
11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20	30	
12	일자리창출 지원	20	30	
13	기업유치활동 지원	정액		
14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정액		
15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정액		
16	대중교통 육성 지원	20	30	
17	경관 조성사업	20	30	
18	지방도로 관리	100		
19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100		
20	재난예방 및 복구	30	40	
21	토지정보 확충 사업	20	30	
22	농촌 정주여건 개선	20	3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23	지역 특화사업 육성	20	30	
24	정예농업인 양성	20	30	
25	친환경 농업 육성	20	30	
26	식량작물 육성	20	30	
27	농업생산기반 조성	20	30	
28	농산물 수출진흥 사업	20	30	
29	지역특화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0	30	
30	농산물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30	40	
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0	30	
32	축산물 경쟁력강화 사업	20	30	
33	가축방역 사업	20	30	
34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20	30	
35	내수면어업 활성화	20	30	
36	산림자원 조성	20	30	
37	산림환경 보호	20	30	
38	일반 사회복지 지원 사업	30	40	
39	저소득층 지원 사업	30	40	
40	청소년 건전 육성	20	30	
41	보육서비스 지원	30	40	
42	건강가정 육성	20	30	
43	여성 권익증진 사업	20	30	
44	여성 인적자원 개발	20	30	
45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30	4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46	노인 복지 지원	30	40	
47	장애인 복지 지원	30	40	
48	인공면역 획득사업	20	30	
49	종교·문화원·향교 지원	20	30	
50	문화유산 보존 사업	30	40	
51	문화인프라구축 및 콘텐츠 육성	20	30	
52	문화시설 운영 지원	정액		
53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정액		
54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	20	30	
55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20	30	
56	시군 체육행사 지원	정액		
57	시군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제외
58	맑은물 공급사업	20	30	
59	소방시설 신·증축	30	40	용지매입비제외
6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정액		
61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	정액		
62	아동급식 확대 지원(학기중)	정액		
63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0	30	
64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정액		
65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액		
66	누리과정 운영 지원	정액		
67	출산장려 사업	20	30	
68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20	30	
69	태양광산업 육성	정액		
70	산업자원 안전 관리	20	3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71	농업인 복지 증진	30	40	
72	지역특화작목 육성	30	40	
73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20	30	
74	산림경영 지원	20	30	
75	생태환경 산지 관리	20	30	
76	시군 문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제외
77	시군 축제 지원		정액	
78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정액	
79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0	30	
80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20	30	
81	대기환경 개선	20	30	
82	지역개발 촉진	20	30	
83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액	
84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정액	
85	한방바이오 R&D 강화	20	30	
86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0	30	
87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20	30	
88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20	30	
89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	20	30	
90	그 밖에 도와 시·군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보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어업경영·산림경영·가축사육·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주택 복구
-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사. 공공시설의 복구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4.1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개정 2013.4.22>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구호금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자·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 지원			
1) 응급 구호	구호물품 지원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 구호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이 전파(全破)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침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간 구호를 한다.
3) 생계 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 위 표 나목3)·4)의 생계 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하여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林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가. 주택 복구			
1) 주택 파손·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0퍼센트 나) 용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주택 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반파 주택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p>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전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과 주택의 용자비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p> <p>(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6) 주택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p> <p>(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로 한다.</p> <p>(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p>
2) 주택 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3) 세입자 보조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4)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 지원 60퍼센트	재단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

	장이 고시하는 금액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를 입었을 때에는 1 피해지구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물은 평균 심도(深度)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대파(代播)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1) 지원 50퍼센트 (2) 용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 농경지의 유실·매물·침수 또는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물·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를 지원한다.
나) 농약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落果) 또는 가뭄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초지 유실·매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잠실(蠶室)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4) 가축 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 유실·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魚)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成魚)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수도	복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가)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에 드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나) 자체 설계 및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

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 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郡道), 농어촌도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시설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	복구에 드는 금액	지방비 100퍼센트	
나)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70퍼센트 (2) 지방비 30퍼센트	
다) 사유림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라) 수산시설(수산물 유통·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용자 50퍼센트	
마) 사립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1) 지방비 50퍼센트 (2) 자기 부담 50퍼센트	

비고

1.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2.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4.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水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 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